

『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9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9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9월 26일

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박 종 우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서는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클러스터 조성과 글로벌 통신사업자 시험·인증을 통한 지역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남유진
- (3) 소 재 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2,000,000천원(도비 600,000천원, 시비 1,400,000천원)
※ 3차년도('17. 6월 ~ '18. 5월) 소요예산 중 시비 매칭 금액

○ 주요 사업

- (1) 사 업 명 :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
- (2) 사업기간 : 2015년 6월 ~ 2020년 5월 (5년간)
- 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- (4) 총사업비 : 420억원 [국비(지특)220, 도비30, 시비70, 민자100]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계	420	50	130	120	65	55
국 비	220	20	65	85	30	20
도 비	30	6	6	6	6	6
시 비	70	14	14	14	14	14
민 자	100	10	45	15	15	15

- (5) 추진주체 : 미래창조과학부, 경상북도, 구미시
- (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7) 사업내용
 -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 시험인증 환경 조성을 위해 글로벌 통신사업자(Nokia, China Mobile, Verizon 등) 대상으로 국내 최초 해외 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
 - 글로벌 해외통신사업자 인증 획득을 통해 해외에 나가지 않고 해외에서 인증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국내 인증 대행 서비스 제공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5. 2 : Alcatel-Lucent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
- 2015. 3 : 'K-ICT 전략' 중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 스타기업
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
- 2015. 6 :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1차년 협약 체결
- 2015. 8 : China Mobile 인증랩 구축 확정 MOU 체결
- 2016. 5 : Nokia 2G, 3G 인증장비 구축 완료
- 2016. 6 :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2차년 협약 체결
- 2016. 8 :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개소식
- 2017. 2 : Nokia 및 China 4G 인증장비 구축 예정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3조,
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14조, 제22조,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, 제31조,
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
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-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

-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인증랩 구축을 위해,
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스마트 기기, IoT 단말,
국산 네트워크 장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 전용 인증
지원 체계를 마련, 시험·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,

- 개발기간 단축 및 인증비용 절감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단말 시장진출 기회 제공 및 시장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